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김제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3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김제리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김달호, 김창원,
김화숙, 이병도,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정재웅,
한기영, 황인구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보훈단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현안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재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인 실정임.
- 이에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여 올바른 보훈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정례적인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각 단체별 특성 및 설립목적에 고려한 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u></p> <p><u>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u>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u> <u>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 <u>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u>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0조 (생략)</u></p>	<p><u>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p>

문서번호	2021011900000006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1.19	
회신일 : 2021.01.25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2,000천원으로 연평균 8,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위원은 총10명(이중 수당지급 대상은 9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 비용(제10조)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소계(b)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총비용(b-a)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 비용 ≙ 42,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비용)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운영 비용
 - = (참석수당×수당지급 참석인원×개최건수)+(업무추진경비×참석인원×개최건수)
 - = (200,000원×9명×4회)+(30,000원×10명×4회)
 - = 8,400천원

-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5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